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557호 2023. 1. 10.(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25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문 ····· 8

고성군 고시 제2023-2호 개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1차변경) 승인 고시문 ···· 11

고성군 고시 제2023-35호 202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고시문 ····· 14

회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3-25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0.

고 성 군 수

1. 개정 이유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 향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확대(5년→7년) 및 결정된 대상자의 최초 적용일을 규정(안 제6조)

나. 신청기관을 변경(읍면장→군수)(안 제7조)

3. 의견제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2) 전화: (055)670-2744, 팩스: (055)670-219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자메일(hanmy2001@korea.kr)

붙임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 을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84개월”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장” 을 “군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던 지원대상자(“종전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원대상자의 최초 신청일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한 날을 최초의 신청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등) ① ----------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84개월 ---------.
②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민등록 관할 읍 ·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 군수----------.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읍 · 면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붙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항: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나. 관련조문: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선정 대상자 45명(2022.12.기준)

2) 사업규모:

- 2023년: 82,620천 원

▶ 82,620천 원(45명×*918천 원×**2회)

*2022.12. 지원액 평균 금액 **상·하반기

- 지원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군 비	82,620	90,882	99,970	109,967	120,964	504,403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 2027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재원조달	의존재원						
	자체재원	82,620	90,882	99,970	109,967	120,964	504,403
	기 타						
	소 계	82,620	90,882	99,970	109,967	120,964	504,403

작성자: 건축개발과장 이 현 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3-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6.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월평리 1054-10, 1059-1, 1054-9	고성읍 월평1길 82-162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월평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2	고성읍 율대리 913	고성읍 공단로 172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안전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3	삼산면 두포리 산203-1	삼산면 두포4길 209-1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4	하이면 봉현리 133-1	하이면 하이로 502-72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을 이용하여 하이로로 명명	
5	상리면 척번정리 824	상리면 척번정2길 24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상리면 척번정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6	대가면 신전리 437	대가면 신전길 138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자연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개천면 청광리 435	개천면 청광로 356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개천면 청광리)을 이용하여 청광로로 명명	
8	회화면 배둔리 1350-1, 1350-2	회화면 마구들3길 106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자연지명인 마구들길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9	거류면 당동리 112-3, 112-4	거류면 당동6길 34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 당동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10	영오면 영대리 1018	영오면 영대4길 25	2023.1.6.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영대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변경

연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	변경사유	비고
1	대가면 신전길56	대가면 신전길140	2023. 01. 06.	주출입구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고성군 고시 제2023-2호

개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성군 개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9.

고 성 군 수

1. 사업의 목적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으로 주민 기초생활 여건과 함께 삶의 질 향상하여 주민역량강화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활력 증진

2. 사업개요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건강복지센터, 건강활력마당, 면민쉼터
- 지역경관개선: 수변산책로, 마을길 가꾸기
- 지역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컨설팅, 마을경영 등

❍ 총사업비: 4,000백만 원(국비 2,800, 도비 360, 군비 840)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5년간)

3. 사업의 효과

❍ 문화, 복지, 체육 등 중심지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심지의 거점기능 회복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소재지의 지역중심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사업시행자: 고성군수(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 위탁시행)

5. 시행계획 승인내역: 붙임과 같음

6.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 (☎055-670-4143)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055-670-7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사업비 변경 비율표

(단위: 백만 원)

사업명	기본계획 사업비(A)			시행계획(세부설계) 사업비(B)			증.감(B-A)			절대값 국비 (C)	증감 비율 국비 (C/A)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총 계	4,000	2,800	1,200	4,000	2,800	1,200	-	-	-	**144**	**5.1%**	
기초생활기반확충	3,099	2,169	930	3,187	2,231	956	**88**	**62**	**26**	**62**	**2.9%**	
건강활력센터	2,143	1,500	643	2,347	1,643	704	204	143	61			
건강활력마당	815	570	245	713	499	214	△ 102	△ 71	△ 31			
면미쉼터	141	99	42	127	89	38	△ 14	△ 10	△ 4			
지역경관개선	128	90	38	93	65	28	△ **35**	△ **25**	△ **10**	**25**	**27.8%**	
마을길 가꾸끼	50	35	15	27	19	8	△ 23	△ 16	△ 7			
수변산책로	78	55	23	66	46	20	△ 12	△ 9	△ 3			
지역역량강화	265	185	80	197	138	59	△ **68**	△ **47**	△ **21**	**47**	**25.4%**	
역량강화	155	108	47	127	89	38	△ 28	△ 19	△ 9			
경영지원	110	77	33	70	49	21	△ 40	△ 28	△ 12			
부대경비	508	356	152	523	366	157	**15**	**10**	**5**	**10**	**2.8%**	

고성군 공고 제2023-35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1. 10.

고 성 군 수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현황

(단위: 명)

주민등록 인구수 (2022.12.31.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8세 이상 주민, 선거건 없는 자 제외)			주민투표 청구연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의 체류자격)		
50,448	45,286	45,239	47	6,470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현황

(단위: 명)

주민등록 인구수 (2022.12.31.기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9세 이상 주민, 선거건 없는 자 제외)			선거구별 서명인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50,448	44,817	44,775	42	별지참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현황

(단위: 명)

주민등록 인구수 (2022.12.31.기준)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18세 이상 주민, 선거건 없는 자 제외)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50,448	45,286	45,239	47	1,133	청구권자 총수의 1/40

[별지]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고성군수

시군	구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비고
			최소기준	15/100	
고성군	**총 계**	**44,817**		**6,723**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5개 이상 읍면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고성읍	20,071	449		
	삼산면	1,653	248		
	하일면	1,687	254		
	하이면	2,390	359		
	상리면	1,537	231		
	대가면	1,579	237		
	영현면	841	127		
	영오면	1,327	200		
	개천면	1,033	155		
	구만면	980	147		
	회화면	3,135	449		
	마암면	1,676	252		
	동해면	2,938	441		
	거류면	3,970	449		

□ 고성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	구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비고
			최소기준	20/100	
가 선거구	**계**	**21,650**		**4,330**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읍면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고성읍	20,071	217		
	대가면	1,579	217		
나 선거구	**계**	**8,108**		**1,622**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2개 이상 면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삼산면	1,653	82		
	하일면	1,687	82		
	하이면	2,390	82		
	상리면	1,537	82		
	영현면	841	82		
다 선거구	**계**	**15,059**		**3,012**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3개 이상 면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영오면	1,327	151		
	개천면	1,033	151		
	구만면	980	151		
	회화면	3,135	151		
	마암면	1,676	151		
	동해면	2,938	151		
	거류면	3,970	151		